

<p>個 洞은 各 두분씩 그리고 人口 4萬 초과인 3個 洞은 各 3人씩 總 806名으로 調整하여 當初 778人보다 28名이 增加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內容은 補助資料로 나누어 드린 區議會議員 選舉區와 選舉區別 議員定數 調整內譯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상으로 서울特別市區議會議員選舉區와 選舉區別議員定數에 관한條例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아무쪼록 本 條例 改正案이 原案대로 改正될 수 있도록 委員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p> <p>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提案된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서울特別市區議會議員選舉區와 選舉區別議員定數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1. 委員會回附</p> <p>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서울特別市長(95.3.30)</p> <p>나. 回附日字: 95.3.31</p> <p>다. 上程日字: 第76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95.4.13)</p> <p>2. 提案說明의 要旨</p> <p>가. 提案理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地方議會議員選舉法이 廢止되고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이 새로 制定됩니다. ○'91區議會議員選舉 以後 人口變動·行政區域改編·洞名稱 變更 等 區議會 議員選舉區 및 議員定數 調整事由가 發生됨에 따라, '95 第1回 全國 同時 地方選舉를 對備하여 公職選舉및 選舉不正防止法 第23條, 第26條第2項과 同法施行令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따라 現行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p>나. 主要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區議會議員選舉區는 現行 494個가 526個로 되어 32個 增加 ○區議會議員定數는 現行 778人에서 806人이 되어 28人이 增加 ○區議會議員選舉區名이 改正 <p>3. 關係法規</p> <p>가. 公職選舉및 選舉不正防止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 自治區·市·郡의 地方議會(以下 “自治區·郡議會”라 한다) 議員定數는 그 管轄區域안의 邑·面·洞(行政洞)마다 1人으로 하되, 人口 2萬을 넘는 邑·面·洞에 있어서는 2萬은 넘는 每 2萬까지 마다 1人을 더한다. 이 境遇 그 基準에 依하여 算定된 議員數가 7人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定數를 7人으로 하고, 45人을 넘는 때에는 그 定數를 45人으로 한다. 다만, 人口가 70萬을 넘는 때에는 그 定數를 50人으로 한다. · 第26條 第2項(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省 略 ②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舉區는 邑·面·洞單位로 劃定하되, 選舉區의 名稱과 그 選舉區別 議員定數는 市·道條例로 定한다. ③省 略 <p>나. 公職選舉및 選舉不正防止法施行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2條(自治區·市·郡議會議員의 選舉區別議員定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法 第23條의 基準에 依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7人미만이 되는 境遇 또는 人口 70萬을 넘는 自治區·市·郡의 議員定數가 50人미만이 되는 境遇에는 그 選舉區別 議員定數는 7人 또는 50人에 未達되는 數에 自治區·市·郡의 人口에 對한 各選舉區의 人口比率를 符合하여 算定한 數 中 定數部分이 있으면 그 定數만큼 該當選舉區에 追加하고, 小數點以下 部分은 그 數가 큰 順으로
--	---

1人씩 該當選舉區에 各各 7人 또는 50人에 達할때까지 追加한다.

②法 第23條의 基準에 依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45人을 넘는 境遇 또는 人口 70萬을 넘는 自治區·市·郡의 議員定數가 50人을 넘는 境遇에는 그 選舉區別 議員定數가 2人以上인 選舉區 中에서 議員定數 算定 基準인 人口·每 2萬을 넘는 人口數가 적은 選舉區 順으로 各各 45人 또는 50人에 達할 때까지 1人씩 減한다.

· 第3條(自治區·市·郡議會議員의 選舉區 名稱)

法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自治區·市·郡議會議員의 選舉區名稱은 邑·面·洞의 名稱을 붙여 表示한다.

4. 檢討意見

가. 改正理由

○現行條例는 1991.2.28 第2718號로 制定되었고, 地方議會議員選舉法과 同法施行令에 根據하고 있으나, 1994.3.16 法律 第4739號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이란 綜合選舉法이 制定되면서 本 條例의 上位 根據法令이 改正되었습니다.

○1991.3.26 實施한 區議會議員選舉 以後 서울市 32個洞(行政洞)의 分洞, 1995.3.1 3個區 分區, 1994.12.26 3個地域 自治區間境界調整, 4個地域 市·道間境界調整 等 行政區域의 變更이 完了되었고,

○道路開設·住宅再開發事業 等 大單位工事 等 으로 人口變動과 洞名稱이 變更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事由는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23條, 第26條와 同法施行令 第2條, 第3條의 規定에 依據 반드시 本 條例를 改正하는데 必要不可缺한 事由가 되는 것입니다.

나. 全部改正

○本 條例案은 一部改正이 아닌 全部改正입니다.

○全部改正과 一部改正의 選擇基準으로는 法制處法令立案審査基準에 依하면 첫째,

改正되는 條文이 既存條文의 3분의 2 以上을 차지하거나 둘째, 削除된 條項과 가지番號의 條·號가 많아 새로운 體系로 整備할 必要가 있거나 셋째, 法令의 核心的 部門을 根本적으로 改正함과 아울러 相當한 部門에 걸쳐 이와 關聯된 事項을 整備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全部改正의 方法을 택하도록 되어 있어, 本 條例도 本文에서 制定根據法令이 廢止되고, 새로운 法令이 制定되었으며, 區議員選舉區 名稱인 많은 洞名稱의 變更이 있었고, 人口變動으로 인한 議員定數의 變動이 있어 全部改正이 되었습니다.

다. 改正內容

條例改正의 主要內容은,

○區議會議員選舉區는 當初 494個 行政洞이었으나, '91年以後 32個洞이 增設되어 526個 行政洞으로 調整되었고,

○區議會議員定數는 人口 2萬以下인 249個洞은 各 1人, 人口 2萬超過 每 2萬마다 1人을 더한 274個洞은 各 2人 그리고, 人口 4萬超過인 3個洞은 3人씩. 總 806人으로 調整하여 當初 778人보다 28人이 增加되었습니다.

라. 結語

○本 條例案 改正은 現行條例의 制定根據法令인 地方議會議員選舉法과 同施行令이 廢止되고, 1994.3.16 法律 第4739號로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과 同施行令이 새로 制定되었으며,

○1991.3.26 區議會議員選舉 以後 32個洞의 分洞, 3個區의 分區, 市·道間의 境界調整 等 行政區域의 調整變動이 完了되고, 大單位工事 等으로 인한 人口移動과 洞名稱의 變更으로 區議會議員選舉區 및 議員定數調整事由가 發生됨에 따라 自治立法制定體系上 不可避할 뿐 아니라,

○1995.6.27 全國적으로 同時에 實施하는 4大 地方選舉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해서 是時期的으로 適宜한 條例改正案으로

